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이병환
대한민국 0613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95길 29-13, 301호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9월 24일 (24.09.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JSPCT2019001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07706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06월 26일 (26.06.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07월 03일 (03.07.2018)

국제특허분류(IPC)
A61N 1/04(2006.01)i, A61N 1/32(2006.01)i, A61N 1/08(2006.01)i, A45D 44/00(2006.01)i

출원인
조성우 등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09월 24일 (24.09.2019)

심사관
한인호
전화번호 +82-42-481-3362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2-5	있음
	청구항	1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 KR 10-2012-0122125 A ((주) 아이원 엔터프라이즈) 2012.11.07

D2 : KR 10-0855681 B1 (손기준) 2008.09.03

D3 : KR 10-2009-0047642 A (김남희) 2009.05.13

D4 : JP 2009-125365 A (PANASONIC ELECTRIC WORKS CO., LTD.) 2009.06.11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로 인정되는 인용문헌 D1에는 사람의 얼굴 피부(40) 위에 부착되는 마스크팩(30), 마스크팩을 덮도록 고정되는 이온마스크(10), 이온 마스크 내측면에 설치되는 전류공급단자(11), 전류공급단자에 전원을 인가하는 출력회로부(33)로 구성되며, 마스크팩 조성물에는 이온상태의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여, 전류공급단자로부터 이온전류를 공급받으면 마스크팩 조성물에 함유된 음이온화된 물질들과의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마스크팩 자체가 사용자의 얼굴피부를 가압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는 이온마스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단락 [0035], [0038], [0043], [0047]-[0048] 및 도면 1b-3 참조). 따라서 청구항 1은 인용문헌 D1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2의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이온마스크(10)의 내면에는 전류공급단자(11)가 설치되는 특징(단락 [0035] 및 도면 1b-2 참조) 및 인용문헌 D2에 제시된 마사지부(10)의 양 측면에 체결구(15)가 구비되고, 체결구(15)에는 헤어밴드(40)가 결합되어 마스크를 사용자의 머리부분에 고정시킬 수 있는 특징과 양측의 헤어밴드(40a, 40b)에는 각각 암, 수 벨크로테이프(44)가 설치되는 특징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단락 [0038]-[0039] 및 도면 1 참조).

청구항 3의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2에 제시된 헤어밴드(40)에는 똑 단단추(42)가 형성되어 마사지부(10)의 체결구(15)와 연결되는 특징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하여 도출할 수 있고(단락 [0039] 및 도면 1 참조), 추가적으로 고정밴드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복수개 구성되고, 마스크 본체가 일반적인 피부색으로 구성되는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2-3은 인용문헌 D1 및 D2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4의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2에 제시된 마스크(100)는 마사지부(10)에 공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공기주입펌프(22a)와, 마사지부(10)로 주입된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공기배출펌프(22b)를 구비하는 특징(단락 [0041] 및 도면 5 참조) 및 인용문헌 D3에 제시된 마스크는 공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압력 조절부(151), 마사지 패턴을 선택하는 패턴 선택부(153) 및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제2 동작 표시부(157)를 포함하는 공압 제어부(150)를 갖는 특징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단락 [0049], [0052] 참조). 따라서 청구항 4는 인용문헌 D1 내지 D3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습니다.

청구항 5의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4에 제시된 연산 처리부 (101)는 운동기기(1) 또는 복수 대의 마사지기(2)로부터 수신한 동작 프로그램의 사용 정보를 집계하여 각 동작 프로그램을 사용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부여하고, 순위 결과를 저장부(103)에 저장시키는 집계부(104), 집계부의 판정결과를 화상 데이터로 작성하는 화상 작성 기능부(105), 화상 데이터나 운동 동작 프로그램을 운동기기 또는 복수 대의 마사지에 배포하는 배포 기능부(106)로 구성되는 특징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단락 [0023] 참조). 따라서 청구항 5는 인용문헌 D1 내지 D4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습니다.

II. 산업상 이용 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5는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